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91
----------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김영진 · 민병덕 · 이해식
장종태 · 윤후덕 · 안태준
강득구 · 박지원 · 윤종균
차지호 · 이정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국내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생산시설의 국내 이탈을 방지하고 자국 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생산 촉진 세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

특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6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제품 1개당 감면세액을 생산 수량에 비례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될 것

2. 해당 제품이 그 생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10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 또는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 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수량, 생산 비용 및 판매 수량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 수량, 생산 비용 및 판매 수량의 산정, 제3항의 차감 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와 제100조의35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

제1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제100조의35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과, 제100조의35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제10절의6 국가전략기술사업</u> <u>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u> <u>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u> <u>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u> <u>제)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u> <u>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u> <u>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u> <u>“국가전략기술사업”이라 한다)</u> <u>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다</u> <u>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u> <u>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u> <u>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u> <u>미래형 운송·이동 수단, 바이</u> <u>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제품을 2028년 12월 31일</u> <u>까지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u> <u>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의 100</u> <u>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제품</u> <u>1개당 감면세액을 생산 수량에</u> <u>비례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하</u> <u>는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u> <u>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u>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될 것

2. 해당 제품이 그 생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 10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별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 또는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

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 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
자·배당 및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
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
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
인세를 말한다)의 100분의 10
을 한도로 한다.

③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제24
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
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제1항에 따
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
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
상 제품의 생산 수량, 생산 비
용 및 판매 수량에 관한 자료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
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
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
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
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
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
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
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
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
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
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
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3. -----

제99조의12, 제100조의35-----

4.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

②

1. · 2. (현행과 같음)

3. -----

<u>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u> <u>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u> <u>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u> <u>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u> <u>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u> <u>제한다.</u>
